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BNK K200지수 2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NK K200지수 2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BNK K200지수 2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BNK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9년 08월 2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년 09월 16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1-6910-1100 / 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순자산가치의 일일등락률을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간단위로 KOSPI200지수가 오를 경우에도 양(陽)의 2배 내외를 추구하고 떨어질 때에도 양(陽)의 2배 내외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전체에 대해서 누적하여 2배 내외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변동성이 큰 경우 복리효과로 인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2배 이하의 성과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간단위로만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신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누적적으로 KOSPI200지수 누적수익률의 양(陽)의 2배 내외의 성과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 투자신탁과 KOSPI200지수의 누적수익률간의 음(陰)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매우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동시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이해 등 재무적인 지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결정시 사전적으로 반드시 판매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9년 08월 21일

BNK K200지수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펀드코드 : CS332]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주로 국내주식,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며,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므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BNK K200지수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일간단위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배 내외가 되도록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KOSPI200지수, 현물바스켓(Basket), 레버리지펀드 및 레버리지ETF,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의 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현물 포트폴리오(주식, 레버리지펀드 및 레버리지ETF)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노출수준을 매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배 내외 수준이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비교지수 : KOSPI200지수의 일간수익률*200% - (91일물 CD금리 수익률 ÷ 365)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 종류</th> <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th> <th colspan="5">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 천원)</th> </tr> <tr> <th>판매 수수료</th> <th>총보수</th> <th>판매보수</th> <th>동종유형 총보수</th> <th>1년</th> <th>2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납입금액의 1.0% 이내</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1.000%</td> <td>0.500%</td> <td>0.610%</td> <td>202</td> <td>306</td> <td>415</td> <td>528</td> <td>1,307</td> </tr> <tr> <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td> <td>없음</td> <td>1.500%</td> <td>1.000%</td> <td>1.470%</td> <td>154</td> <td>313</td> <td>478</td> <td>824</td> <td>1,802</td> </tr> <tr> <td>수수료선취-온라인형(Ae)</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납입금액의 0.5% 이내</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0.750%</td> <td>0.250%</td> <td>0.610%</td> <td>127</td> <td>206</td> <td>289</td> <td>465</td> <td>975</td> </tr> <tr> <td>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td> <td>없음</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1.000%</td> <td>0.500%</td> <td>1.050%</td> <td>103</td> <td>209</td> <td>320</td> <td>555</td> <td>1,230</td> </tr> </tbody> </table> <p>(주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2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9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1.000%	0.500%	0.610%	202	306	415	528	1,3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500%	1.000%	1.470%	154	313	478	824	1,80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750%	0.250%	0.610%	127	206	289	465	9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000%	0.500%	1.050%	103	209	320	555	1,230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1.000%	0.500%	0.610%	202	306	415	528	1,3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500%	1.000%	1.470%	154	313	478	824	1,80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750%	0.250%	0.610%	127	206	289	465	9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000%	0.500%	1.050%	103	209	320	555	1,230																																																			
투자실적 추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류</th> <th>최초설정일</th> <th>최근 1년</th> <th>최근 2년</th> <th>최근 3년</th> <th>최근 5년</th> <th>설정일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연평균 수익률)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2019-07-01	-	-	-	-	-	-64.17
	비교지수(%)	2019-07-01	-	-	-	-	-	-64.64
	수익률 변동성(%)	2019-07-01	-	-	-	-	-	22.85

(주1) 비교지수 : KOSPI200지수의 일간수익률*200% - (91일물 CD금리 수익률 ÷ 36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유형)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오준완	1970	책임(상무)	2개	139억	-18.12%	-18.12%	-	-	16.5년
배성영	1989	부책임(사원)	2개	139억	-3.18%	-3.18%	-	-	0.2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순자산보다 더 큰 주식투자비중을 유지하는 투자신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성과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이 보이면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지수의 성과조차 추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완성하므로 파생상품의 내재 변동성 및 민감도에 따라 다른 수익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의 기대수익과 변동성 등의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와 재무적인 사전지식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런 사전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다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복리 효과에 의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를 매일 추구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기간, 시장평균성과, 변동성 등에 따라서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2배 내외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수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할 경우에도 2배 내외, 하락할 경우에도 2배 내외를 추구하는데서 초래되는 결과입니다.	
	레버리지 불가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 구성 주식, KOSPI200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 KOSPI200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현금성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레버리지 전략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급격한 시장 변동, 자금시장의 유동성 악화 및 기타 레버리지 전략을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목적 달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4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4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BNK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9년 09월 16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B)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펀드 및 기관 투자자(F)		펀드 및 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투자자* 구분 기준>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Wrap전용(W)		Wrap Account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좌)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 K200지수 2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S332)						
(클래스) 종류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W	Class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S333	CS334	CS335	CS336	CS337	CS338	CS33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좌(=1원) 단위로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개시일은 2019년 07월 01일 예정이며,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 K200지수 2배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CS332)						
(클래스) 종류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Class C-W	Class 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S333	CS334	CS335	CS336	CS337	CS338	CS33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9.06.29	최초 효력발생
2019.09.16	기업공시서식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BNK 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5층 (대표전화 : 02-6910-1100)

주1)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9.06.07 기준)

(1)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다른 운용자산 규모(억)	
			전체	성과보수 有	전체	성과보수 有
오준완	1970	책임운용 (Passive운용 본부장)	1	-	131	-
배성영	1989	부책임운용 (Passive운용 사원)	1	-	131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패시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께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어 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Class)	한글 표기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및 기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신탁업자
S	수수료후취-온라인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주1) 각 종류별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일간단위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배 내외가 되도록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주1)}: KOSPI200지수의 일간수익률 X 200% - (91일물 CD금리 수익률 ÷ 365)

주1)KOSPI200 :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의 거래 대상으로 1994년 개발한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200종목으로 구성(지수정보 : 한국거래소, www.krx.co.kr)

주2)91일물 CD금리 :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2회 고시하는 우량 시중은행(신용평가등급 AAA인 시중은행)이 발행한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 이상 (주식관련 장내 파생상품 포함)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 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집합투자 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⑥	장내파생 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10%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음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⑧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⑨	투자증권 차입	20% 이하	①~④에 의한 증권에 대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⑪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의 거래	
<p>위의 ①~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내용
①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

	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③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 투자대상 ⑥~⑨, 위의 나. 투자제한 ②~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 위의 나. 투자제한 ②의 본문, ④ 내지 ⑤ 및 집합투자계약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의 “가.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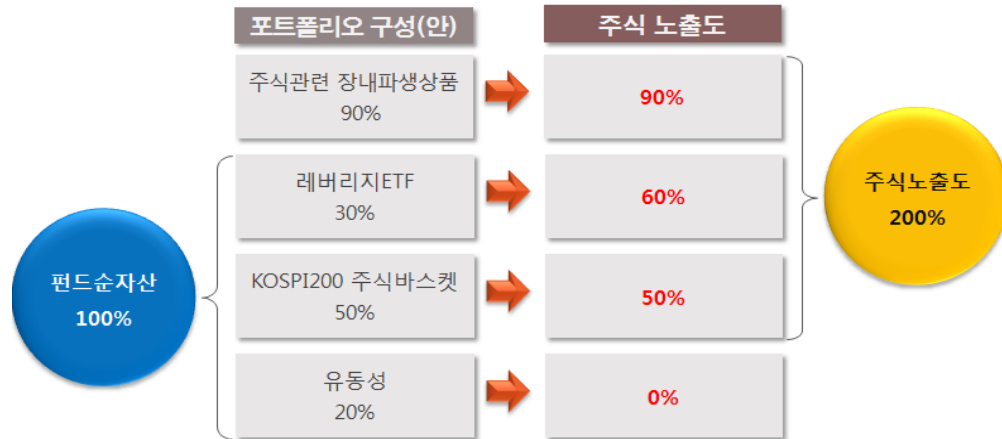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KOSPI200지수, 현물바스켓(Basket), 레버리지펀드 및 레버리지ETF,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의 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현물 포트폴리오(주식, 레버리지펀드 및 레버리지ETF)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노출수준을 매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배 수준이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방안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Tracking Error) 발생 원인]

- 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등)은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 발생
- 매 영업일 KOSPI200지수와 선물가격의 차이(현선물 베이스)의 확대 또는 축소로 인해 추적오차 발생
- 매 영업일 KOSPI200지수 복제를 위한 주식/ETF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추적오차 발생
- 펀드 설정 및 환매대금의 급변동 및 기타 시장상황 등에 따라서 추적오차 발생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사전적 관리	사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구성시 내부 운용 프로세스를 통해 투자유의 종목 편입을 제한하여 부도위험이 있는 종목은 사전적으로 배제하거나 투자비중을 축소 ✓ BM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적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Risk Factor에 대한 엄격한 제약조건 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중 추적오차 분석모형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 일별 추적오차가 주어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추적오차 분석모형을 통한 원인분석 수행 및 대응책 수립 후 포트폴리오 조정 실시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위험관리

- 추적하는 비교지수와와의 추적오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시 포트폴리오 재조정 실시
- 실시간 추적오차 모니터링 및 손익분석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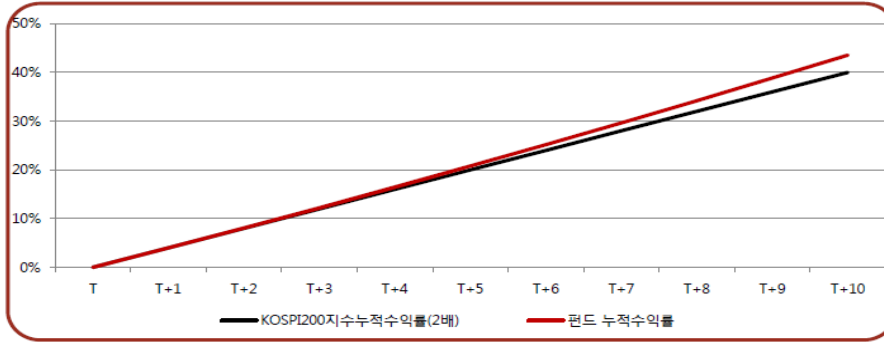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신탁을 하루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결과는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해당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 단순히 2배한 것과는 같을 수 없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적수익률 차이 예시]

아래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투자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의 운용수익률은 시장상황 및 운용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KOSPI200지수가 상승할 경우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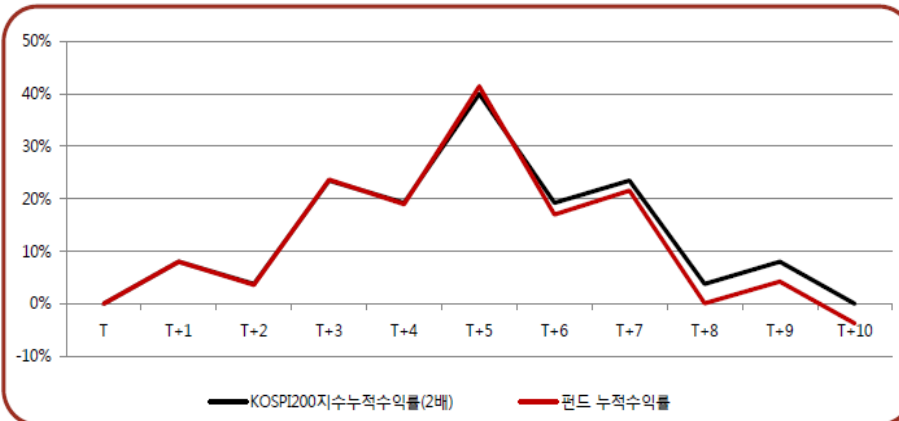
지수 기간수익률 2배 40.00% < 펀드 기간수익률 43.53% ⇒ 3.53% 괴리 발생

KOSPI200 지수 가 기간 중 266.65pt 에서 319.98pt 로 상승함에 따라 기간수익률의 2배를 산출할 경우 40.00%이나 펀드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일일등락률을 감안할 경우 43.53%로 3.53%p의 괴리 발생

구분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KOSPI200지수	266.65	271.98	277.32	282.65	287.98	293.32	298.65	303.98	309.31	314.65	319.98
KOSPI200지수일일등락률	0.00%	2.00%	1.96%	1.92%	1.89%	1.85%	1.82%	1.79%	1.75%	1.72%	1.69%
KOSPI200지수일일등락률(2배)	0.00%	4.00%	3.92%	3.85%	3.77%	3.70%	3.64%	3.57%	3.51%	3.45%	3.39%
KOSPI200지수누적수익률(2배)	0%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32.00%	36.00%	40.00%
펀드기준가격	1,000	1,040	1,081	1,122	1,165	1,208	1,252	1,296	1,342	1,388	1,435
펀드 일일수익률	0.00%	4.00%	3.92%	3.85%	3.77%	3.70%	3.64%	3.57%	3.51%	3.45%	3.39%
펀드 누적수익률	0.00%	4.00%	8.08%	12.24%	16.47%	20.78%	25.18%	29.65%	34.20%	38.82%	43.53%
누적수익률 차이	0.00%	0.00%	0.08%	0.24%	0.47%	0.78%	1.18%	1.65%	2.20%	2.82%	3.53%

주1) 누적수익률 차이 = 펀드 누적수익률 - KOSPI200지수누적수익률(2배)

➤ KOSPI200지수 상승 후 하락할 경우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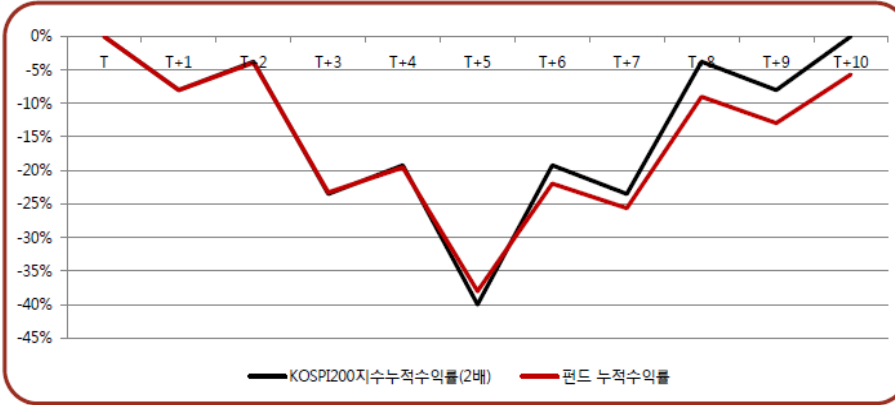
지수 기간수익률 2배 0.00% > 펀드 기간수익률 △3.77% ⇒ △3.77% 괴리 발생

KOSPI200 지수 가 기간 중 266.65pt에서 319.98pt로 상승 후 다시 266.65pt로 하락함에 따라 기간수익률의 2배를 산출할 경우 0%이나 펀드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일일등락률을 감안할 경우 △3.77%p의 괴리 발생

구분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KOSPI200지수	266.65	277.32	271.65	297.98	292.32	319.98	292.32	297.98	271.65	277.32	266.65
KOSPI200지수일일등락률	0.00%	4.00%	-2.04%	9.69%	-1.90%	9.46%	-8.65%	1.94%	-8.84%	2.09%	-3.85%
KOSPI200지수일일등락률(2배)	0.00%	8.00%	-4.09%	19.39%	-3.80%	18.93%	-17.29%	3.88%	-17.67%	4.17%	-7.69%
KOSPI200지수누적수익률(2배)	0%	8.00%	3.75%	23.50%	19.25%	40.00%	19.25%	23.50%	3.75%	8.00%	0.00%
펀드기준가격	1,000	1,080	1,036	1,237	1,190	1,415	1,170	1,216	1,001	1,042	962
펀드 일일수익률	0.00%	8.00%	-4.09%	19.39%	-3.80%	18.93%	-17.29%	3.88%	-17.67%	4.17%	-7.69%
펀드 누적수익률	0.00%	8.00%	3.59%	23.67%	18.97%	41.48%	17.02%	21.56%	0.07%	4.25%	-3.77%
누적수익률 차이	0.00%	0.00%	-0.16%	0.17%	-0.28%	1.48%	-2.23%	-1.94%	-3.68%	-3.75%	-3.77%

주1) 누적수익률 차이 = 펀드 누적수익률 - KOSPI200지수누적수익률(2배)

➤ KOSPI200지수 하락 후 상승할 경우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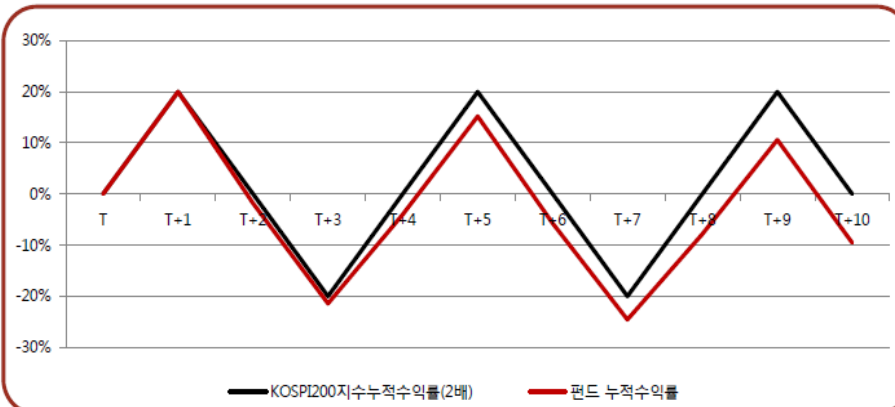
지수 기간수익률 2배 0.00%
 > 펀드 기간수익률 $\Delta 5.68\%$
 ⇒ $\Delta 5.68\%$ 괴리 발생

KOSPI200 지수가 기간 중 266.65pt에서 213.32pt로 하락 후 다시 266.65pt로 상승함에 따라 기간수익률의 2배를 산출할 경우 0% 이나 펀드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일일등락률을 감안할 경우 $\Delta 5.68\%$ 의 괴리 발생

구분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KOSPI200지수	266.65	255.98	261.65	235.32	240.98	213.32	240.98	235.32	261.65	255.98	266.65
KOSPI200지수일일등락률	0.00%	-4.00%	2.21%	-10.06%	2.41%	-11.48%	12.97%	-2.35%	11.19%	-2.17%	4.17%
KOSPI200지수일일등락률(2배)	0.00%	-8.00%	4.43%	-20.13%	4.82%	-22.96%	25.94%	-4.70%	22.38%	-4.33%	8.33%
KOSPI200지수누적수익률(2배)	0%	-8.00%	-3.75%	-23.50%	-19.25%	-40.00%	-19.25%	-23.50%	-3.75%	-8.00%	0.00%
펀드기준가격	1,000	920	961	767	804	620	780	744	910	871	943
펀드 일일수익률	0.00%	-8.00%	4.43%	-20.13%	4.82%	-22.96%	25.94%	-4.70%	22.38%	-4.33%	8.33%
펀드 누적수익률	0.00%	-8.00%	-3.93%	-23.26%	-19.57%	-38.04%	-21.96%	-25.63%	-8.99%	-12.93%	-5.68%
누적수익률 차이	0.00%	0.00%	-0.18%	0.24%	-0.32%	1.96%	-2.71%	-2.13%	-5.24%	-4.93%	-5.68%

주1) 누적수익률 차이 = 펀드 누적수익률 - KOSPI200지수누적수익률(2배)

➤ KOSPI200지수가 횡보할 경우 시나리오



지수 기간수익률 2배 0.00%
 > 펀드 기간수익률 $\Delta 9.52\%$
 ⇒ $\Delta 9.52\%$ 괴리 발생

KOSPI200지수가 기간 중 횡보하여 266.65pt에서 266.65pt로 변동이 없을 경우 기간수익률의 2배를 산출하여도 수익률 변동이 없으나 펀드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일일등락률을 감안할 경우 $\Delta 9.52\%$ 의 괴리 발생

구분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KOSPI200지수	266.65	293.32	266.65	239.99	266.65	293.32	266.65	239.99	266.65	293.32	266.65
KOSPI200지수일일등락률	0.00%	10.00%	-9.09%	-10.00%	11.11%	10.00%	-9.09%	-10.00%	11.11%	10.00%	-9.09%
KOSPI200지수일일등락률(2배)	0.00%	20.00%	-18.18%	-20.00%	22.22%	20.00%	-18.18%	-20.00%	22.22%	20.00%	-18.18%
KOSPI200지수누적수익률(2배)	0%	20.00%	0.00%	-20.00%	0.00%	20.00%	0.00%	-20.00%	0.00%	20.00%	0.00%
펀드기준가격	1,000	1,200	982	785	960	1,152	943	754	922	1,106	905
펀드 일일수익률	0.00%	20.00%	-18.18%	-20.00%	22.22%	20.00%	-18.18%	-20.00%	22.22%	20.00%	-18.18%
펀드 누적수익률	0.00%	20.00%	-1.82%	-21.45%	-4.00%	15.20%	-5.75%	-24.60%	-7.84%	10.59%	-9.52%
누적수익률 차이	0.00%	0.00%	-1.82%	-1.45%	-4.00%	-4.80%	-5.75%	-4.60%	-7.84%	-9.41%	-9.52%

주1) 누적수익률 차이 = 펀드 누적수익률 - KOSPI200지수누적수익률(2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은 국내외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요소는 개별 주식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레버리지 효과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이용하므로 일반 주식형펀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파생상품 투자위험을 내포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로 운용하고자 하는 대상지수를 관리하는 지수 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일간단위로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순자산보다 더 큰 주식투자비중을 유지하는 투자신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성과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이 보이면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지수의 성과조차 추적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완성하므로 파생상품의 내재 변동성 및 민감도에 따라 다른 수익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의 기대수익과 변동성 등의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와 재무적인 사전지식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런 사전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다른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복리 효과에 의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를 매일 추구하는 투자신탁으로 투자기간, 시장평균성과, 변동성 등에 따라서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2배 내외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수의 성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승할 경우에도 2배 내외, 하락할 경우에도 2배 내외를 추구하는데서 초래되는 결과입니다.
레버리지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순자산보다 더 큰 주식관련 투자비중을 유지하는

<p>투자방법상의 위험</p>	<p>투자신탁으로서 일일 주식시장 성과의 특정배수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배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빈번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현물주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매매회전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더 확대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감소하므로 주가하락시 더 큰 하락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는 운용역의 적절할 대응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레버리지 비율이 극단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p>
<p>누적수익률과 괴리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간단위로 KOSPI200지수가 오를 경우에도 2배 내외를 추구하고 떨어질 때에도 2배 내외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전체에 대해서 누적하여 2배 내외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p>
<p>파생상품 롤오버 (Roll-Over)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OSPI200지수 구성종목, KOSPI200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 KOSPI200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한 합성선물의 매수포지션 등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물 또는 옵션은 현물과는 달리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차기 선물 또는 옵션으로 다시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재투자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롤오버 위험이라고 하며 롤오버 위험 등으로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p>
<p>레버리지 불가능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 구성 주식, KOSPI200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 KOSPI200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현금성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레버리지 전략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급격한 시장 변동, 자금시장의 유동성 악화 및 기타 레버리지 전략을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과 기초지수의 괴리에 따른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증권,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일정 배수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일일등락률과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 또는 일일등락률의 일정 배수한 값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의 일일등락률과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한 값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지속되는 경우, 복리로 누적된 오차로 인해 그 괴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레버리지전략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편입비 미달 또는 초과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 구성 주식, KOSPI200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 KOSPI200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현금성 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의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급등락하거나, 자금시장의 유동성 악화 및 다양한 환경변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또는 기초지수와 수익률 괴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레버리지전략 달성을 위한 목표 포트폴리오 편입비 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KOSPI200지수와 KOSPI200지수 선물가격이 괴리가 발생하거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과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이 괴리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러한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초 목표한 포트폴리오 편입비 수준을 하회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설정/환매로 인한 포트폴리오 비중 미달 또는 초과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KOSPI200지수 구성 주식, KOSPI200지수 관련 집합투자증권, KOSPI200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현금성 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에 있어, 추가 설정액 또는 환매액이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경우,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 수익 추구를 위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미달 또는 초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KOSPI200지수 일일등락률의 2배 내외 수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기초지수와 상관관계 저하</p>	<p>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은 일간단위로 KOSPI200지수와 투자신탁의 성과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이 일간단위</p>

위험	로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OSPI200지수와 투자신탁의 일간 단위 성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운용구조, 투자성과, 투자신탁보수, 거래비용 등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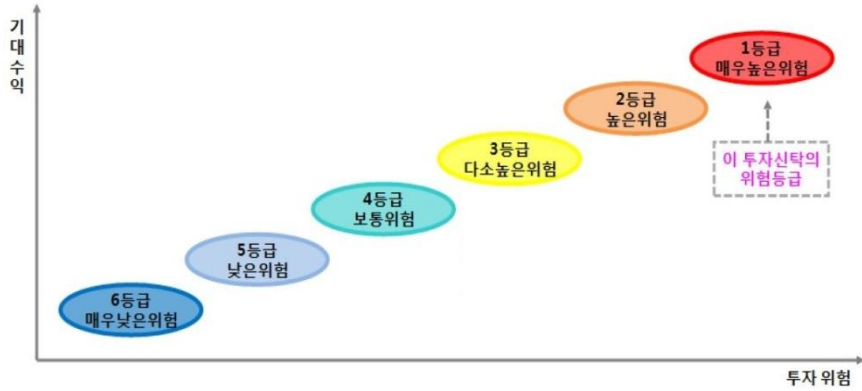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레버리지 펀드로 수익구조 등이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로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레버리지 효과 및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일일등락률 기준 레버리지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 및 "시장의 움직임 및 변동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미경과 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위험등급 분류기준 - 설정 후 3년 경과 시]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주1)}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2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2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2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2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오후 2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법시행령 제 256 조)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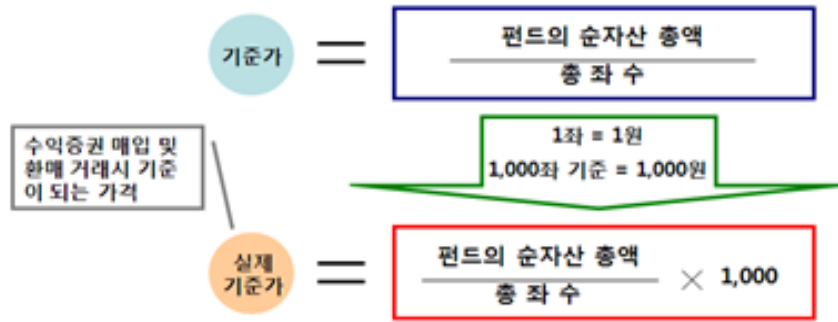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bnkasset.co.kr)· 판매회사· 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발행/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평가
⑤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비상장채권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⑦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 위원 -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팀장, 운용담당팀장, 리스크관리담당팀장, 컴플라이언스담당팀장
- 위원회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설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lass)	한글 표기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납입시	환매시	환매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1.0% 이내	-	없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납입금액의 0.5% 이내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및 기관	-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	
S	수수료후취-온라인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주1) 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2) 판매회사는 Class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주3) 이 투자신탁의 종류(Class)별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한글 표기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 투자업자	판매회 사	신탁업 자	일반 사무관 리	기타비용	총 보수 및 비용	동종 유형 총 보수	증권 거래비용
지급시 기		매 3개월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445	0.500	0.035	0.020	0.001	1.001	0.610	0.300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250			0.001	0.751	0.610	0.30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000			0.001	1.501	1.470	0.300
C-e	수수료미징구-		0.500			0.001	1.001	1.050	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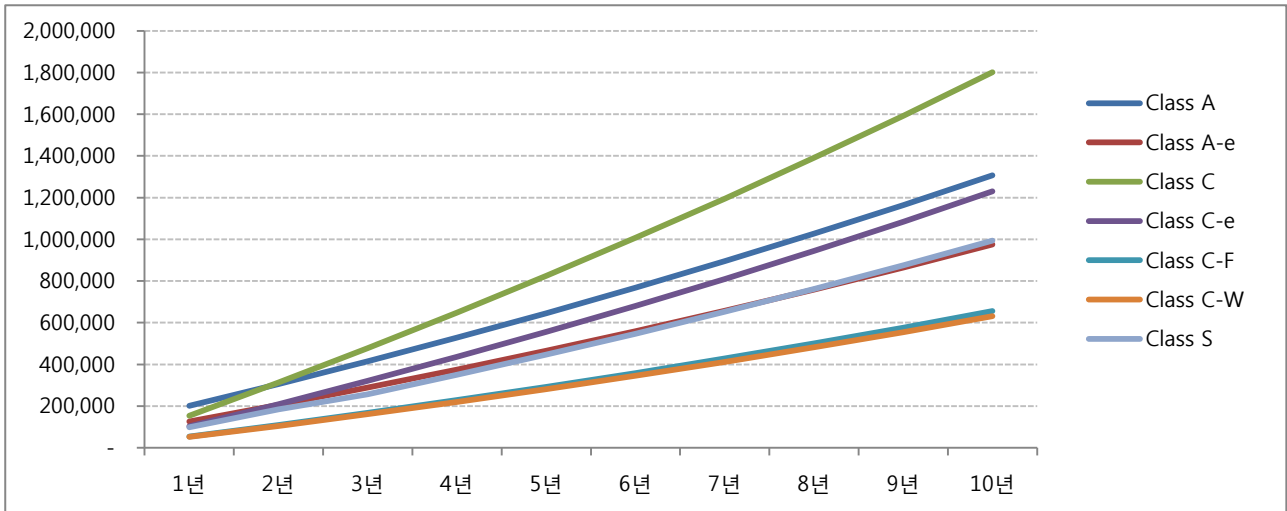
	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및 기관	0.020			0.001	0.521		0.300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000			0.001	0.501		0.300
S	수수료후취-온라인	0.300			0.001	0.801		0.300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이 투자신탁은 최초로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당사에서 유사한 전략의 다른 투자신탁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Class)	한글 표기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202	306	415	646	1,307
A-e	수수료선취-온라인	127	206	289	465	975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54	354	478	824	1,802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03	209	320	555	1,230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및 기관	53	109	167	292	655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51	105	161	281	631
S	수수료후취-온라인	98	184	257	446	994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Class A와 Class C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안되는 시점이나, Class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Class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0%, Class A-e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5%를 반영하였습니다.
- 주4) Class S의 경우 1년후는 그 시점에 환매청구한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 0.15%를 반영하였고, 3년후부터는 3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 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 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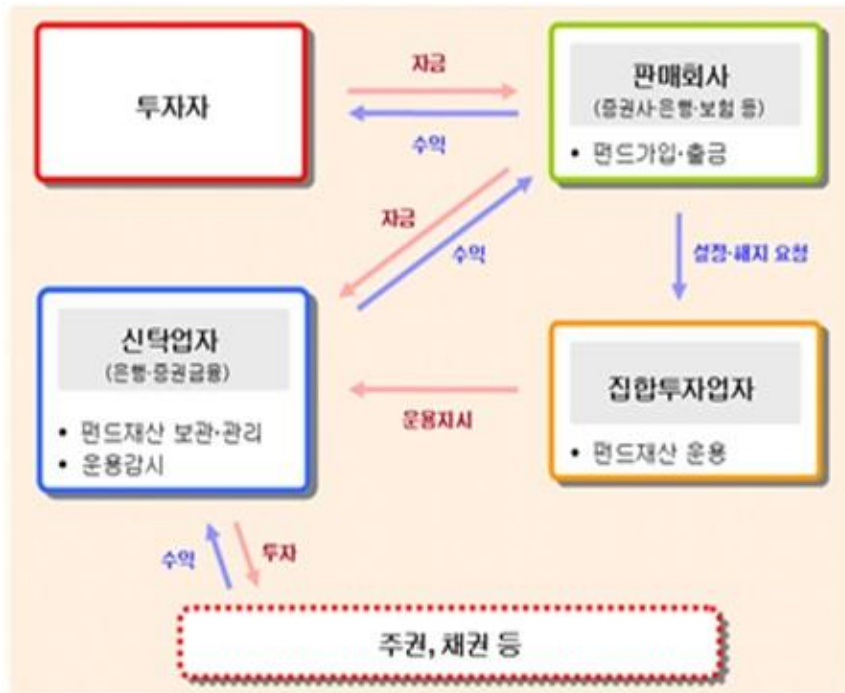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2019.06.07 기준)

회사명	BNK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5층 (연락처 : 02-6910-1100, www.bnkasset.co.kr)
회사 연혁	2008.07 GS 자산운용(주) 설립 2015.07 자본금 증자(+40.5 억) 및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사명 변경 2017.12 BNK 금융지주 100% 자회사 편입 및 자본금 증자(+30 억) 2018.11 자본금 증자(+30 억)
자본금	230.5 억
주요 주주현황	BNK 금융지주(100%)
이해관계인	한국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17.12.31	'18.12.31	항 목	'17.01.01~ '17.12.31	'18.01.01~ '18.12.31
현금및예치금	37,248	3,938	영업수익	5,565	7,396
유가증권	906	63,815			
대출채권	132	39			
유형자산	516	610	영업비용	4,736	7,115
기타자산	2,951	3,204			
자산총계	41,753	71,606	영업이익	829	281
예수부채	55	64			
기타부채	833	615	영업외수익	-	70
부채총계	888	679			
자본금	20,050	23,050	영업외비용	327	204
자본잉여금	26,986	47,796			
이익잉여금	-6,175	80			
자본조정	0	0	경상이익	503	147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5	0	법인세 등	-205	72
자본총계	40,866	70,926	당기순이익	708	75

라. 운용자산 규모(2019.06.07 기준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3,994	10,960	1,420	-	307	809	368	-	945	20,066	38,86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1가)

	☎ 02-1588-1111
회 사 연 혁 등 (홈 페이지 참조)	www.hanabank.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www.aitas.co.kr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단, 집합투자계약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제 36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제18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⑧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⑩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

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125조 각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법 제87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92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대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⑨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0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04월 0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파생상품 관련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nkasset.co.kr)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①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 ② ①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②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③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④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②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③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⑤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